

우루과이 라운드 多者間貿易協商과 韓國經濟

張 義 泰

〈慶熙大學校教授·經博〉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多者間貿易協商은 금년 12월 브뤼셀 世界通商長官會議에서 終了될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최종협상의 단계에 있다. 同協商의 결과가 韓國經濟에 직접·간접으로 미칠 波及效果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R 協商에 대한 一般의 올바른 認識 및 理解는 부족한 실정이다. UR 協商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UR 協商의 展望 및 韓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UR 協商에 수반하여 韓國經濟는 어떠한 對策을 취해야 할 것인가.

UR은 GATT(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署名國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8번째 多者間貿易協商이며 1986년 9월 Uruguay의 休養都市 Punta del Este에서 閣僚宣言을 採擇하면서 개시되었다. GATT는 自由貿易體制의 確立을 目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成立되었으며 현재署名國은 96개국에 이르고 있다.署名國들 중에는 開發途上國들뿐만 아니라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같은 社會主義國家들도 포함되어 있다.

GATT의 多者間協商은 投票를 통한 多數決原則에 따르지 않고 當事國들의 合意에 의하기 때문에 協商妥結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과거 7차에 걸친 多者間協商을 통하여 관세장벽을 크게 낮추었다. 과거 GATT 協商에서 主議題는 關稅引下였으며 제6차 多者間協商인 Kennedy

Round(63~67)에서 관세율은 획기적으로 引下되었다. OECD 국가들의 平均關稅率은 1950년대에는 50%에 달하였으나 1970년대 초에 9%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제7차 協商인 Tokyo Round(73~79)의 결과로 工產品에 대한 關稅率은 6%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多者間貿易協商을 통한 關稅引下措置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國際交易의 확대와 經濟成長의 촉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퀴타와 같은 非關稅障壁이 貿易規制手段으로서 빈번하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Tokyo Round에서는 非關稅障壁의 제거가 중요한 協商議題로 채택되었으나 각국은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였으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1970년대 말 國際石油波動과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新保護主義 경향이 심화되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철강, 신발, 전자제품 등 新興工業國들의 主輸出品目에 대하여 輸出自律規制라는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흥공업국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 提訴가 輸入規制目的으로 남용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출자율규제는 GATT의 基本原則이 되고 있는 無差別原則을 위배하고 差別的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便法으로서 開途國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開途國의 不公正貿易

慣行과 특히 GATT 18조 B항의 國際收支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의 남용을 지적하였다. 특히 막대한 貿易赤字를 기록한 미국은 不公正貿易에 대한制裁를 강화하였으며 일본, 대만, 한국 등 주요交易相對國에 대해서도 美 通商法 301條에 의거*하여 미국이 比較優位를 누리고 있는 農產物,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요컨대 지난번 多者間貿易協商인 Tokyo Round (73~79)는 關稅引下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심화된 新保護主義 경향은 GATT 중심의 多者間 自由貿易體制를 크게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소위 말하는 灰色地帶措置(grey area measures)가 확산되었으며 GATT 規定들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수입규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GATT의 多者主義를 무시하고 交易相對國에 대해서一方的 市場開放 요구와 무역보복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自由貿易體制의 약화를 막고 多者間規範을 확립하며 GATT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UR 多者間協商을 출범시킨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번 UR 協商은 대단히 많은 議題를 協商對象으로 하고 있다. 商品交易에 관한 14개의 제제와 서비스교역, 즉 15개의 協商議題를 채택하고 있다. 14개 상품교역 협상의 제제는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품목, 섬유, 農產物, 热帶產品, GATT 條文, MTN 協定, 緊急輸入制限措置, 補助金 및 相計關稅, 貿易關聯 知的所有權, 貿易關聯 投資措置, 紛爭解決, GATT 기능 강화이다. 특히 그동안 GATT 協商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던 開發途上國들의 關心分野인 農산물과 섬유문제가 協商議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R 協商에서 開途國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 선진국들은 새로운 議題(new issues)로 채택된 서비스, 貿易關聯 知的所有權 그리고 貿易關聯 投資措置에 대한 협상에 역점을 두고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UR 協商에서 각국의 利害關係는 協商議題에 따라서 상이하며 따라서 協商妥結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협상은 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나 금번 협상에는 開途國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農產物, 纖維問題에서 미국, EC, 일본은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서비스 協商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다. 今年末 UR 協商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면서 타결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自由貿易體制를 유지·강화하고 多者間規範을 확립하기 위한 많은 국가들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UR 協商이 韓國經濟에 직접·간접으로 미치게 될 波及效果는 무엇인가. 첫째, 금번 協商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多者間規範이 합의되어 수출자유규제와 같은 회색지대조치



가 제거되고 덤펑 提訴의 남용이 억제된다면 한국 수출제품의 선진국시장 진출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섬유의 국제교역을 규제하는 MFA (Multi Fibre Agreements) 가 철폐되고 GATT의 다자간규범에 따라 섬유교역이 자유화된다면 韓國 纖維產業은 크게 得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農業, 서비스部門에서 交易自由化로 인하여 韓國經濟는 產業構造調整의 부담을 크게 지게 될 것이다. 특히 農產物市場의 개방은 국내 農業生產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농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社會的, 歷史的 측면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外國農產物 수입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내 서비스產業은 대부분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交易擴大 또는 外國企業의 國內進出로 인하여 国내시장이 크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비스교역 확대에 수반하여 선진국 多國籍企業의 國內進出과 이들의 지배력에 대한 견제가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결국 다자간규범의 확립과 國際交易의 자유화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대해서 海外市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로 하여금 그동안 保護狀態에 있던 農業 및 서비스產業을 國際競爭에 노출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多者間規範의 確立과 自由貿易體制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國內市場이 협소하며 賦存資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교역의 利點을 활용하고 技術習得, 技術開發, 人力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多者間規範에 의한 자유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UR 協商에 수반하여 어떠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 UR 協商의 결과는 불확실하나 이와 관계없이 한국경제는 적극적으로開放化, 國際化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對外依存度가 높아지고 그에 따르는 위협이 우려되고 있으나 對內的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화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對外依存의 심화는 독자적인 開發政策의 추구

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방화와 국제화는 개인의 創意와 能力を 구현시키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農業 및 서비스產業部門에서 대외경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으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產業構造의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生產性 및 効率을 증진시키고 경제의 여타 部門에 이익이 되며 결국 農民, 企業, 勞動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國內市場 개방과 國際化의 추진에 따라서 政府役割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個別產業 또는 個別企業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지양되고 民間 經濟主體의 자율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國內產業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다한 규제의 整備, 緩和 및 制度改善이 시급하다. 국내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과거 政府主導型 產業育成政策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個別產業에 대한 복잡다각한 政府規制는 상호 일관성 및 有機的連結을 기하기 어렵고 관료주의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獨寡占, 地代追求活動의 원인이 됨으로써 국내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기업의 競爭力を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산업에 대한 규제의 整備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은 談合行爲, 不公正行爲 등을 유발할 것이며 개방에 따른 利點, 즉 品質改善, 使用者利益, 技術習得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國際化의 추진과 함께 市場機能을 제약하는 정부의 간여는 止揚되어야 할 것이나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消費者保護 그리고 獨寡占 및 不公正行爲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의 강화가 繁要하게 요구되고 있다. 消費者保護는 製品品質의改善을 촉진시키는 첨경인 것이며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國內市場을 개방하면 국내공급자들뿐만 아니라 외국공급자들도 이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같은 論理에 따라서 獨寡占 및 不公正行爲에 대한 규제의 강화도 시급하다. ▲